

[수정안 포함]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04조 및 제105조, 제107조'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 기관의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4년 6월 18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4년 6월 20일

라. 상정일자 : 94년 6월 26일(제4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4613호, '93. 12. 27)에 따라 시장의 임용권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소의 간소화를 도모함.

나.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임용권 위임조항 신설)

① 수입기관 : 구청장

- 5급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직위부여권)
- 구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평, 경평,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정개, 직위 해제, 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집입, 시보해제
-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 회계직 공무원 임명
- 지방별정직공무원(8급상당, 동부녀봉사관)임용

② 수입기관 : 시의회 사무국장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번	내	용
• 앞으로 구의 과장 및 동장의 직위부여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이 보직을 부여하게 되며 앞으로 이에 적용을 받게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285
의결 년월일	94. 6. 27 (제29회)

제안년월일 : 1994. 6월 26일

제안자 : 김일섭의원의외 13인

1. 수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6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동조례안중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되는 조항 관련 중앙의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의회 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의 내용을 중앙지침대로 현행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여 발전적인 지방의회운영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조례안 제2조(위임사항)중 제3호

시의회사무국장의 위임사항중 위임사무명에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권한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 임조례'		조례명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1 조 (목적)..... 시 장 의 권한사무중 그 일부를 <u>구청장</u>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제1조(목적)..... 구청장, 동장및시의회사 무국장에게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u>구청장및 동장</u> 에게 위임하는		제2조(위임사항)..... <u>구청장, 동장 및 시의</u> <u>회사무국장에게</u>			제2조(위임사항) (개정안과 같음)																															
(별표)		(별표)																																		
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1. (개정안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실과별</th> <th>위임사무명</th> </tr> <tr> <td>기 회</td> <td>(생 략)</td> </tr> <tr> <td>담 당 관 실</td> <td></td> </tr> <tr> <td>감 사</td> <td>(생 략)</td> </tr> <tr> <td>담 당 관 실</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r> <tr> <td>세 정 과</td> <td>(생 략)</td> </tr> </table>	실과별	위임사무명	기 회	(생 략)	담 당 관 실		감 사	(생 략)	담 당 관 실		신 설		세 정 과	(생 략)		<table border="1"> <tr> <th>실과별</th> <th>위임사무명</th> </tr> <tr> <td>기 회</td> <td>(헌행과같음)</td> </tr> <tr> <td>담 당 관 실</td> <td></td> </tr> <tr> <td>감 사</td> <td>(헌행과같음)</td> </tr> <tr> <td>담 당 관 실</td> <td></td> </tr> <tr> <td>총 무 과</td> <td>(별 지 참 조)</td> </tr> <tr> <td>시 정 과</td> <td>(별 지 참 조)</td> </tr> <tr> <td>세 정 과</td> <td>(헌행과같음)</td> </tr> </table>	실과별	위임사무명	기 회	(헌행과같음)	담 당 관 실		감 사	(헌행과같음)	담 당 관 실		총 무 과	(별 지 참 조)	시 정 과	(별 지 참 조)	세 정 과	(헌행과같음)				
실과별	위임사무명																																			
기 회	(생 략)																																			
담 당 관 실																																				
감 사	(생 략)																																			
담 당 관 실																																				
신 설																																				
세 정 과	(생 략)																																			
실과별	위임사무명																																			
기 회	(헌행과같음)																																			
담 당 관 실																																				
감 사	(헌행과같음)																																			
담 당 관 실																																				
총 무 과	(별 지 참 조)																																			
시 정 과	(별 지 참 조)																																			
세 정 과	(헌행과같음)																																			
2. 동위임사항(생략)		2. 동위임사항(헌행과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설)		3. <u>시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u>			3. <u>시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u>																															
		<table border="1"> <tr> <th>실과별</th> <th>위임사무명</th> </tr> <tr> <td>총무과</td> <td>(별지1참조)</td> </tr> </table>	실과별	위임사무명	총무과	(별지1참조)			<table border="1"> <tr> <th>실과별</th> <th>위임사무명</th> </tr> <tr> <td>총무과</td> <td>(별지2참조)</td> </tr> </table>	실과별	위임사무명	총무과	(별지2참조)																							
실과별	위임사무명																																			
총무과	(별지1참조)																																			
실과별	위임사무명																																			
총무과	(별지2참조)																																			

[수정안포함]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부천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를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를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로 하고 '별표'중

1.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중 감사담당관실란 다음에 총무과란 및 시정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민방위과의 사무를 총무과 사무로 하며, '별표'중 '2. 동위임사항' 다음에 '3. 시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적용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2.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전보 3.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6. 13

다. 상정일자 : 94. 6. 17

라. 의결일자 : 94. 6. 17